2020년 귀속 소득ㆍ세액공제증명서류: 기본내역 [건강보험료]

(조회기간 : 2020년 01 ~ 12월)

■ 가입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		
이희주	730124-*****		

■ 건강보험료(직장가입자) 내역

(단위:원)

он	보수월액(고지금액)	소득월액(납부금액)		
월별	건강보험료①	장기요양보험료②	건강보험료③	장기요양보험료④	
01월	154,160	15,800	0	0	
02월	154,160	15,800	0	0	
03월	154,160	15,800	0	0	
04월	153,260	15,700	0	0	
05월	153,260	15,700	0	0	
06월	153,260	15,700	0	0	
07월	153,260	15,700	0	0	
08월	153,260	15,700	0	0	
09월	153,260	15,700	0	0	
10월	153,260	15,700	0	0	
11월	153,260	15,700	0	0	
12월	153,260	15,700	0	0	
연말정산	-12,330	-990			
합계	1,829,490	187,710	0	0	
총합계				2,017,200	

1. 보수월액 보험료 :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지한 금액이며,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과 다른 경우 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소득공제대상금액은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입니다. (둘 이상의 회사에 근무한 경우에는 합산한 보험료가 제공됩니다.)

2. 소득월액 보험료 : 연간 납부한 금액이 제공됩니다.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20년 귀속 소득 · 세액공제증명서류 [국민연금보험료]

(조회기간 : 2020년 01 ~ 12월)

■ 가입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		
이희주	730124-*****		

■ 국민연금보험료 내역 (단위:원)

월별	직장가입자 고지금액	지역가입자 등 납부금액	
01월	205,150	0	
02월	205,150	0	
03월	205,150	0	
04월	205,150	0	
05월	205,150	0	
06월	205,150	0	
07월	203,940	0	
08월	203,940	0	
09월	203,940	0	
10월	203,940	0	
11월	203,940	0	
12월	203,940	0	
직장가입자 소급고지금액	0		
추납보	험료 납부금액	0	
실업크	0		
합계	2,454,540	0	
	충합계		

- 1. 직장가입자 고지금액: 국민연금공단이 고지한 금액이며,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과 다른 경우 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소득공제대상금액은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입니다. (둘 이상의 회사에 근무한 경우 합산한 보험료가 제공됩니다.)
- ※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근로자는 해당 지원금이 공제된 금액으로 월별 고지금액이 제공되며, 지원금 공제 시점에 따라 월별 고지금액이 마이너스(-)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.
- 2. 지역가입자·추납보험료·실업크레딧 납부금액은 연간 납부한 금액이 제공됩니다.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(조회기간 : 2020년 01 ~ 12월)

■ 계약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이희주	730124-****

■ 보장성보험(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)납입내역

(단위:원)

	상 호		보험종류				
종류	사업자반	호	증권번호		주피보험자		납입금액 계
	종피보험자1((수익자)	종피보험자2(수익자)		종피보험자3(수익자)		
	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 주 식회사 (영업소)		(무)Chubb 치아안심	(무)Chubb 치아안심보험1701 (R			
보장성	116-84-00	907	LTD862**	***	730124-*****	이희주	587,640
	삼성화재해상보험 (주)		개인용 애니카 자동차				
보장성	202-81-45	617	120T12**	***	730124-****	이희주	779,430
	삼성화재해상보	.험 (주)	개인용 애니키	자동차			
보장성	202-81-45617		120F40**	***	730124-****	이희주	23,400
	삼성화재해상보	.험 (주)	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100세건 강				
보장성	202-81-45617		509047****		730124-*****	이희주	2,466,000

1. 공제 대상: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과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(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포함)

2. 공제 한도 : 100만원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(조회기간 : 2020년 01 ~ 12월)

■ 계약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		
이희주	730124-*****		

■ 보장성보험(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)납입내역

(단위:원)

	상 호		보험종-	류			
종류	류 사업자번호		사업자번호 증권번호		주피보험자		납입금액 계
	종피보험자1(수익자)	종피보험자2(수익자)		종피보험자3(수익자)		
	삼성화재해상보	험(주)	무배당 삼성화재 운	· 삼성화재 운전보험 탑운			
보장성	202-81-45	617	510005****		730124-****	이희주	120,000
	인별합계금액						3,976,470

1. 공제 대상: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과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(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포함)

-4-

2. 공제 한도 : 100만원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(조회기간 : 2020년 01 ~ 12월)

■ 계약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조영혜	730426-****

■ 보장성보험(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)납입내역

(단위:원)

	상 호		보험종.	류			
종류	사업자번	호	증권번호		주피보험자		납입금액 계
	종피보험자1(수익자)	종피보험자20	종피보험자2(수익자)		종피보험자3(수익자)	
	메트라이프생명보험 (주)		무배당 My Fund 변액유니버셜 보				
보장성	120-81-32	969	000250**	***	730426-*****	조영혜	454,428
	현대해상화재보험 (주)		무배당굿앤굿어린이CI보험 (Hi070				
보장성	102-81-32	035	L20072**	L20072****		이승연	418,200
	730426-*****	조영혜					
	현대해상화재보험 (주)		무배당굿앤굿어 (Hi080	무배당굿앤굿어린이CI보험 (Hi080			
보장성	102-81-32035		L20085**	***	081115-*****	이가연	411,120
	730426-*****	조영혜					
	현대해상화재보험 (주)		무배당하이라이프하이스타골드 종				
보장성	102-81-32035		L01004****		730426-*****	조영혜	961,200

1. 공제 대상: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과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(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포함)

2. 공제 한도 : 100만원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(조회기간 : 2020년 01 ~ 12월)

■ 계약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		
조영혜	730426-*****		

■ 보장성보험(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)납입내역

(단위:원)

	상 호		보험종	류									
종류	루 사업자번호		사업자번호		사업자번호		사업자번호		증권번:	호	주피보험	l자	납입금액 계
	종피보험자1(수익자)	종피보험자2(수익자)		종피보험자3(수익자)								
	에이아이에이생명보	보험 주식회사	(무)어린이Ⅲ 3										
보장성	711-87-00	663	235400****		070517-*****	이승연	73,440						
	인별합계금액						2,318,388						

1. 공제 대상: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과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(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포함)

2. 공제 한도 : 100만원

일련번호: 20210601-09875765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-6-

(조회기간 : 2020년 01 ~ 12월)

■ 환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	
이희주	730124-*****	

■ 의료비 지출내역 (단위:원)

사 업 자 번 호	상 호	종 류	지출금액 계
4-27-64*	민승****	일반	2,206,900
5-29-33*	나래****	일반	12,000
4-12-67*	한솔****	일반	13,000
6-83-01*	무주****	일반	8,600
5-82-00*	(학****	일반	149,920
5-96-03*	중앙****	일반	8,200
4-90-82*	이중****	일반	4,800
7-90-70*	바른****	일반	5,000
5-91-61*	조이****	일반	8,900
8-14-70*	하늘****	일반	3,200
7-59-00*	드 넓****	일반	114,600
의료비 인별합계금액			2,535,120
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			0
산후조리원 인별합계금액			0

- 1. 공제 대상 :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(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)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%를 초과한 금액
 - ※ 미용 목적 성형(교정) 비용 및 건강기능식품(보약) 구입비용,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'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 환급금' 및 출산 전 진료비원지원금에 해당하는 의료비,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의료비 등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

-7-

- 2. 공제 한도 : 본인·장애인·65세 이상 자·건강보험 산정특례자·난임시술비(한도 없음) 그 외 부양가족(700만원) ※ 시력보정용 안경(콘택트렌즈)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,
 - 2019년 이후 지출한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(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만 해당)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(조회기간 : 2020년 01 ~ 12월)

■ 환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	
이희주	730124-*****	

■ 의료비 지출내역 (단위:원)

사 업 자 번 호	상 호	종 류	지출금액 계
인별합계금액			2,535,120

- 1. 공제 대상 :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(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)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%를 초과한 금액
 - ※ 미용 목적 성형(교정) 비용 및 건강기능식품(보약) 구입비용,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'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 환급금' 및 출산 전 진료비원지원금에 해당하는 의료비,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의료비 등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

-8-

- 2. 공제 한도 : 본인·장애인·65세 이상 자·건강보험 산정특례자·난임시술비(한도 없음) 그 외 부양가족(700만원) ※ 시력보정용 안경(콘택트렌즈)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,
 - 2019년 이후 지출한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(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만 해당)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(조회기간 : 2020년 01 ~ 12월)

■ 환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	
이가연	081115-*****	

■ 의료비 지출내역 (단위:원)

사 업 자 번 호	상 호	종 류	지출금액 계
4-92-92*	가지****	일반	5,200
5-91-90*	김영****	일반	37,800
5-96-09*	인수****	일반	200,000
5-29-33*	나래****	일반	8,500
5-82-00*	(학****	일반	3,000
5-90-15*	세계****	일반	56,000
5-82-10*	의료****	일반	57,600
7-90-70*	바른****	일반	1,886,700
5-91-61*	조이****	일반	21,800
8-14-70*	하늘****	일반	21,800
7-43-00*	효안****	일반	470,400
9-07-01*	스마****	일반	19,500
의료비 인별합계금액			2,788,300
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			0

- 1. 공제 대상 :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(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)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%를 초과한 금액
 - ※ 미용 목적 성형(교정) 비용 및 건강기능식품(보약) 구입비용,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'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 환급금' 및 출산 전 진료비원지원금에 해당하는 의료비,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의료비 등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

-9-

- 2. 공제 한도 : 본인·장애인·65세 이상 자·건강보험 산정특례자·난임시술비(한도 없음) 그 외 부양가족(700만원) ※ 시력보정용 안경(콘택트렌즈)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,
 - 2019년 이후 지출한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(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만 해당)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(조회기간 : 2020년 01 ~ 12월)

■ 환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이가연	081115-*****

■ 의료비 지출내역 (단위:원)

사 업 자 번 호	상 호	종 류	지출금액 계
산후조리원 인별합계금액			0
인별합계금액			2,788,300

- 1. 공제 대상 :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(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)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%를 초과한 금액
 - ※ 미용 목적 성형(교정) 비용 및 건강기능식품(보약) 구입비용,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'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 환급금' 및 출산 전 진료비원지원금에 해당하는 의료비,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의료비 등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

-10-

- 2. 공제 한도 : 본인·장애인·65세 이상 자·건강보험 산정특례자·난임시술비(한도 없음) 그 외 부양가족(700만원) ※ 시력보정용 안경(콘택트렌즈)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,
 - 2019년 이후 지출한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(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만 해당)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(조회기간 : 2020년 01 ~ 12월)

■ 환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	
박유순	320714-*****	

■ 의료비 지출내역 (단위:원)

사 업 자 번 호	상 호	종 류	지출금액 계
2-82-00*	(재****	일반	21,700
2-17-85*	삼천****	일반	37,100
2-23-79*	으뜸****	일반	39,700
8-12-03*	소망****	일반	20,400
2-81-93*	유한****	일반	370,410
2-21-36*	예새****	일반	307,200
2-99-00*	바르****	일반	8,200
5-82-00*	예은****	일반	587,070
의료비 인별합계금액			1,391,780
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			0
산후조리원 인별합계금액			0
인별합계금액			1,391,780

- 1. 공제 대상 :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(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)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%를 초과한 금액
 - ※ 미용 목적 성형(교정) 비용 및 건강기능식품(보약) 구입비용,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'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 환급금' 및 출산 전 진료비원지원금에 해당하는 의료비,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의료비 등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

-11-

- 2. 공제 한도 : 본인·장애인·65세 이상 자·건강보험 산정특례자·난임시술비(한도 없음) 그 외 부양가족(700만원) ※ 시력보정용 안경(콘택트렌즈)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,
 - 2019년 이후 지출한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(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만 해당)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(조회기간 : 2020년 01 ~ 12월)

■ 환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	
이승연	070517-*****	

■ 의료비 지출내역 (단위:원)

사 업 자 번 호	상 호	종 류	지출금액 계
5-96-09*	인수****	일반	400,000
4-12-67*	한솔****	일반	1,800
5-10-37*	이화****	일반	2,200
5-90-15*	세계****	일반	56,000
5-82-10*	의료****	일반	14,300
5-19-37*	씨앤****	일반	4,800
7-90-70*	바른****	일반	1,483,500
5-91-61*	조이****	일반	6,600
5-91-50*	서울****	일반	9,200
8-14-70*	하늘****	일반	3,400
7-43-00*	효안****	일반	802,400
5-05-00*	애플****	일반	12,500
의료비 인별합계금액			2,796,700
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			0

- 1. 공제 대상 :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(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)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%를 초과한 금액
 - ※ 미용 목적 성형(교정) 비용 및 건강기능식품(보약) 구입비용,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'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 환급금' 및 출산 전 진료비원지원금에 해당하는 의료비,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의료비 등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

-12-

- 2. 공제 한도 : 본인·장애인·65세 이상 자·건강보험 산정특례자·난임시술비(한도 없음) 그 외 부양가족(700만원) ※ 시력보정용 안경(콘택트렌즈)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,
 - 2019년 이후 지출한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(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만 해당)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(조회기간 : 2020년 01 ~ 12월)

■ 환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이승연	070517-*****

■ 의료비 지출내역 (단위:원)

사 업 자 번 호	상 호	종 류	지출금액 계
산후조리원 인별합계금액			0
인별합계금액			2,796,700

- 1. 공제 대상 :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(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)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%를 초과한 금액
 - ※ 미용 목적 성형(교정) 비용 및 건강기능식품(보약) 구입비용,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'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 환급금' 및 출산 전 진료비원지원금에 해당하는 의료비,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의료비 등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

-13-

- 2. 공제 한도 : 본인·장애인·65세 이상 자·건강보험 산정특례자·난임시술비(한도 없음) 그 외 부양가족(700만원) ※ 시력보정용 안경(콘택트렌즈)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,
 - 2019년 이후 지출한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(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만 해당)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(조회기간 : 2020년 01 ~ 12월)

■ 환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조영혜	730426-*****

■ 의료비 지출내역 (단위:원)

사 업 자 번 호	상 호	종 류	지출금액 계
4-08-60*	대전****	일반	40,800
5-91-90*	김영****	일반	4,800
5-29-33*	나래****	일반	25,600
5-10-37*	이화****	일반	29,470
5-82-00*	(학****	일반	182,900
5-82-00*	인구****	일반	120,000
5-33-57*	서울****	일반	2,069,000
4-90-82*	이중****	일반	15,900
7-90-70*	바른****	일반	33,900
5-90-48*	현대****	일반	12,000
7-43-00*	효안****	일반	6,000
5-05-00*	애플****	일반	7,100
9-07-01*	스마****	일반	2,500
의료비 인별합계금액			2,549,970

- 1. 공제 대상 :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(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)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%를 초과한 금액
 - ※ 미용 목적 성형(교정) 비용 및 건강기능식품(보약) 구입비용,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'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 환급금' 및 출산 전 진료비원지원금에 해당하는 의료비,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의료비 등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

-14-

- 2. 공제 한도 : 본인·장애인·65세 이상 자·건강보험 산정특례자·난임시술비(한도 없음) 그 외 부양가족(700만원) ※ 시력보정용 안경(콘택트렌즈)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,
 - 2019년 이후 지출한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(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만 해당)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(조회기간 : 2020년 01 ~ 12월)

■ 환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조영혜	730426-*****

■ 의료비 지출내역 (단위:원)

사 업 자 번 호	상 호	종 류	지출금액 계
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			0
산후조리원 인별합계금액			0
인별합계금액			2,549,970

- 1. 공제 대상 :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(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)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%를 초과한 금액
 - ※ 미용 목적 성형(교정) 비용 및 건강기능식품(보약) 구입비용,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'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 환급금' 및 출산 전 진료비원지원금에 해당하는 의료비,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의료비 등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

-15-

- 2. 공제 한도 : 본인·장애인·65세 이상 자·건강보험 산정특례자·난임시술비(한도 없음) 그 외 부양가족(700만원) ※ 시력보정용 안경(콘택트렌즈)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,
 - 2019년 이후 지출한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(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만 해당)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20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: 기본내역 [실손의료보험금]

(조회기간 : 2020년 01 ~ 12월)

■ 수익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이승연	070517-*****

■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

(단위:원)

상호	상품명	보험계약자		, 성크애 게
사업자번호	계약(증권)번호	피보험자		수령금액 계
현대해상화재보험 (주)	무배당굿앤굿어린이CI보 험Hi0701	730426-*****	조영혜	201,990
102-81-32035	L20072****	070517-*****	이승연	201,990
인별합계금액				201,990

1.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, 의료비 공제대상금액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공제받아야 합니다.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20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: 기본내역 [실손의료보험금]

(조회기간 : 2020년 01 ~ 12월)

■ 수익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조영혜	730426-*****

■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

(단위:원)

상호	상품명	보험계약자		수령금액 계
사업자번호	계약(증권)번호	피보험자		T804/1
현대해상화재보험 (주)	무배당굿앤굿어린이CI보 험Hi0804	730426-*****	조영혜	487 350
102-81-32035	L20085****	081115-*****	이가연	487,350
현대해상화재보험 (주)	무배당하이라이프하이스 타골드종	730426-*****	조영혜	179,500
102-81-32035	L01004****	730426-*****	조영혜	173,300
인별합계금액				666,850

1.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, 의료비 공제대상금액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공제받아야 합니다.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(조회기간 : 2020년 01 ~ 12월)

■ 학생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이승연	070517-*****

■ 교육비 지출내역 (단위:원)

교육비구분	학교명	사업자번호	구분	지출금액계
중학교	***중학교	**5-83-01***	일반교육비	4,610
일반교육비	비 합계금액			4,610
현장학습비	비 합계금액			0

- 1. 아이행복(사랑)카드: 아이행복(사랑)카드를 이용하여 지급한 보육료 중 부모부담금액(정부지원금 제외)이며, 추가로 지급한 보육료가 있는 경우 해당 보육시설에서 '교육비납입증명서'를 발급받아 공제 가능합니다.
- 2. 대학(원)교육비 : 등록금 등 교육비에서 학자금대출과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을 제공합니다.
- ※ 2017년 귀속부터 직계비속 등이 학자금 대출(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는 학자금 대출 중 등록금 대출에 한함)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며, 대출받은 자가 대출금을 상환하는 연도에 원금과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- 3. 공제 한도: 근로자 본인·장애인특수교육비(전액), 취학전 아동·초·중·고등학생(연 300만원), 대학생(연 900만원), 교복구입비용(중·고등학생 1명당 연50만원), 현장학습비(초·중·고등학생 1명당 연 30만원)

-18-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(조회기간 : 2020년 01 ~ 12월)

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이희주	730124-****

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

구분	일반	전통시장	대중교통	도서공연등	합계금액
2020년 합계	17,738,759	29,400	0	0	17,768,159
3월분	762,547	13,400	0	0	775,947
4~7월분	9,338,007	0	0	0	9,338,007
그외 (1~2월,8~12월분)	7,638,205	16,000	0	0	7,654,205

■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(단위:원)

			01월	02월	03월	04월			
구분	상 호 (사 업 자 번 호)	종류	05월	06월	07월	08월	공제대상금액		
	(1212)		09월	10월	11월	12월			
			246,650	218,990	186,720	428,320			
신용카드	롯데카드 주식회사 (120-81-54231)	일반	2,296,471	82,990	928,480	238,010	5,968,351		
			446,530	209,690	444,310	241,190			
				16,000	0	0	0		
신용카드	롯데카드 주식회사 (120-81-54231)	전통시장	0	0	0	0	16,000		
					0	0	0	0	
			300	300	300	300			
신용카드	비씨카드 (주) (214-81-37726)	일반	300	300	600	0	3,600		
			300	300	300	300			

- 1. 공제대상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
- 2. 사용처 구분 : 일반사용분, 전통시장사용분, 대중교통이용분,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(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
- ※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'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'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

일련번호: 20210601-09875765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-19-

(조회기간 : 2020년 01 ~ 12월)

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이희주	730124-****

■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

			01월	02월	03월	04월			
구분	상 호 (사 업 자 번 호)	종류	05월	06월	07월	08월	공제대상금액		
			09월	10월	11월	12월			
			78,050	136,190	166,850	306,720			
신용카드	삼성카드주식회사 (202-81-45602)	일반	2,607,560	17,800	318,150	300	6,000,168		
			1,192,900	252,350	418,078	505,220			
			0	0	13,400	0			
신용카드	삼성카드주식회사 (202-81-45602)	전통시장	0	0	0	0	13,400		
			0	0	0	0			
			233,638	385,461	196,010	64,255			
신용카드	신한카드 주식회사 (202-81-48079)	일반	24,079	792,811	859,661	196,004	2,867,453		
					90,965	1,873	11,792	10,904	
			1,173,419	134,076	212,667	163,044			
신용카드	(주) 전북은행 (418-81-07090)	일반	150,762	145,647	149,757	105,057	2,899,187		
			180,674	216,675	156,976	110,433			

- 1. 공제대상 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
- 2. 사용처 구분 : 일반사용분, 전통시장사용분, 대중교통이용분,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(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
- ※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'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'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(조회기간 : 2020년 01 ~ 12월)

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조영혜	730426-*****

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

구분	일반	전통시장	대중교통	도서공연등	합계금액
2020년 합계	28,821,869	816,000	126,650	50,000	29,814,519
3월분	1,353,890	0	4,100	0	1,357,990
4~7월분	7,673,840	763,000	30,950	25,000	8,492,790
그외 (1~2월,8~12월분)	19,794,139	53,000	91,600	25,000	19,963,739

■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(단위:원)

			01월	02월	03월	04월		
구분	상 호 (사 업 자 번 호)	종류	05월	06월	07월	08월	공제대상금액	
	(- -		09월	10월	11월	12월		
			276,590	293,390	285,580	296,280		
신용카드	신용카드 농협은행 주식회사 (104-86-39742)	일반	605,600	441,780	121,620	328,880	3,902,200	
			331,880	220,470	312,400	387,730		
				0	0	0	0	
신용카드	농협은행 주식회사 (104-86-39742)	도서공연등	0	0	25,000	0	25,000	
			0	0	0	0		
			400,300	400,300	45,300	330,300		
신용카드	삼성카드주식회사 (202-81-45602)	일반	400,300	400,300	383,020	430,700	4,535,260	
			412,000	489,640	400,300	442,800		

- 1. 공제대상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
- 2. 사용처 구분 : 일반사용분, 전통시장사용분, 대중교통이용분,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(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
- ※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'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'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(조회기간 : 2020년 01 ~ 12월)

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		
조영혜	730426-*****		

■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

			01월	02월	03월	04월		
구분	상 호 (사 업 자 번 호)	종류	05월	06월	07월	08월	공제대상금액	
	,, , , , , , , , , , , , , , , , , , , ,		09월	10월	11월	12월		
			0	0	0	0		
신용카드	삼성카드주식회사 (202-81-45602)	대중교통	0	19,700	0	9,400	50,300	
			4,700	11,450	2,700	2,350		
			918,750	64,370	269,030	107,600		
신용카드	신한카드 주식회사 (202-81-48079)	일반	410,000	0	62,100	0	2,192,819	
			192,370	0	168,599	0		
			0	0	0	120,000		
신용카드	신한카드 주식회사 (202-81-48079)	전통시장	340,000	33,000	215,000	53,000	761,000	
			0	0	0	0		
			0	0	0	1,250		
신용카드	신한카드 주식회사 (202-81-48079)	대중교통	0	0	0	0	1,250	
				0	0	0	0	
			0	0	0	0		
신용카드	하나카드 주식회사 (104-86-56659)	일반	0	0	48,620	0	48,620	
			0	0	0	0		

- 1. 공제대상 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
- 2. 사용처 구분 : 일반사용분, 전통시장사용분, 대중교통이용분,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(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
- ※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'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'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(조회기간 : 2020년 01 ~ 12월)

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		
조영혜	730426-*****		

■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

			01월	02월	03월	04월		
구분	상 호 (사 업 자 번 호)	종류	05월	06월	07월	08월	공제대상금액	
			09월	10월	11월	12월		
			1,103,940	1,860,950	753,980	871,720		
신용카드	(주) KB국민카드 (101-86-61717)	일반	1,033,260	848,470	1,312,870	762,090	18,142,970	
			1,619,040	4,732,670	1,452,750	1,791,230		
			0	0	0	0		
신용카드	(주) KB국민카드 (101-86-61717)	전통시장	0	55,000	0	0	55,000	
			0	0	0	0		
			30,700	10,150	4,100	1,250		
신용카드	(주) KB국민카드 (101-86-61717)	대중교통	2,500	1,250	5,000	4,850	75,100	
	,		12,800	2,500	0	0		
				0	25,000	0	0	
신용카드	(주) KB국민카드 (101-86-61717)	도서공연등	0	0	0	0	25,000	
	· 		0	0	0	0		

- 1. 공제대상 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
- 2. 사용처 구분 : 일반사용분, 전통시장사용분, 대중교통이용분,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(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
- ※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'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'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(조회기간 : 2020년 01 ~ 12월)

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		
박유순	320714-*****		

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

구분	일반	전통시장	대중교통	도서공연등	합계금액
2020년 합계	756,400	0	0	0	756,400
3월분	0	0	0	0	0
4~7월분	624,120	0	0	0	624,120
그외 (1~2월,8~12월분)	132,280	0	0	0	132,280

■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(단위:원)

						01월	02월	03월	04월	
구분	상 호 (사 업 자 번 호)	종류	05월	06월	07월	08월	공제대상금액			
	(1812)		09월	10월	11월	12월				
			0	0	0	0				
직불카드 등	(주) 전북은행 (418-81-07090)	일반	178,000	283,600	162,520	132,280	756,400			
			0	0	0	0				

- 1. 공제대상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
- 2. 사용처 구분 : 일반사용분, 전통시장사용분, 대중교통이용분,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(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% 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
- ※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'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'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(조회기간 : 2020년 01 ~ 12월)

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		
이승연	070517-*****		

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

구분	일반	전통시장	대중교통	도서공연등	합계금액
2020년 합계	87,700	0	0	15,800	103,500
3월분	0	0	0	0	0
4~7월분	0	0	0	0	0
그외 (1~2월,8~12월분)	87,700	0	0	15,800	103,500

■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(단위:원)

			01월	02월	03월	04월	
구분	상 호 (사 업 자 번 호)	종류	05월	06월	07월	08월	공제대상금액
	· · - · - /	-	09월	10월	11월	12월	
			0	0	0	0	
직불카드 등	농협은행 주식회사 (104-86-39742)	사 일반	0	0	0	20,100	87,700
				0	17,700	24,900	25,000
			0	0	0	0	
직불카드 등 농협은행 주식회사 (104-86-39742)	도서공연등	0	0	0	15,800	15,800	
			0	0	0	0	

- 1. 공제대상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
- 2. 사용처 구분 : 일반사용분, 전통시장사용분, 대중교통이용분,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(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
- ※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'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'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(조회기간 : 2020년 01 ~ 12월)

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		
조영혜	730426-*****		

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

구분	일반	전통시장	대중교통	도서공연등	합계금액
2020년 합계	6,050,930	0	0	100,100	6,151,030
3월분	0	0	0	0	0
4~7월분	1,564,640	0	0	0	1,564,640
그외 (1~2월,8~12월분)	4,486,290	0	0	100,100	4,586,390

■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(단위:원)

			01월	02월	03월	04월	
구분	상 호 (사 업 자 번 호)	종류	05월	06월	07월	08월	공제대상금액
	· · - · - /		09월	10월	11월	12월	
			0	0	0	0	
직불카드 등	하나카드 주식회사 (104-86-56659)	일반	0	0	1,564,640	700,000	6,050,930
			1,668,300	756,300	798,700	562,990	
			0	0	0	0	
직불카드 등	하나카드 주식회사 (104-86-56659)	도서공연등	0	0	0	0	100,100
			0	0	70,050	30,050	

- 1. 공제대상 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
- 2. 사용처 구분 : 일반사용분, 전통시장사용분, 대중교통이용분,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(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
- ※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'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'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(조회기간 : 2020년 01 ~ 12월)

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		
이희주	730124-*****		

■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집계

구분	일반	전통시장	대중교통	도서공연등	합계금액
2020년 합계	756,840	0	0	55,900	812,740
3월분	0	0	0	0	0
4~7월분	0	0	0	0	0
그외 (1~2월,8~12월분)	756,840	0	0	55,900	812,740

■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(단위:원)

		01월	02월	03월	04월	
구분	종류	05월	06월	07월	08월	공제대상금액
		09월	10월	11월	12월	
		0	0	0	0	
현금영수증	일반거래	0	0	0	20,240	756,840
		500,700	9,000	130,400	96,500	
		0	0	0	0	
현금영수증	도서.공연비등 거래	0	0	0	0	55,900
		0	0	40,800	15,100	

- 1. 공제대상 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,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(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
- ※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%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(「홈택스>상담/제보>현금영수증 미발급>미발급신고하기」) 또는 세무서(현금영수증미발급 신고서 제출)에 신청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(조회기간 : 2020년 01 ~ 12월)

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이가연	081115-*****

■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집계

구분	일반	전통시장	대중교통	도서공연등	합계금액
2020년 합계	13,000	0	0	0	13,000
3월분	4,200	0	0	0	4,200
4~7월분	0	0	0	0	0
그외 (1~2월,8~12월분)	8,800	0	0	0	8,800

■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(단위:원)

		01월	02월	03월	04월	
구분	종류	05월	06월	07월	08월	공제대상금액
		09월	10월	11월	12월	
		8,800	0	4,200	0	
현금영수증	일반거래	0	0	0	0	13,000
		0	0	0	0	

- 1. 공제대상 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,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(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
- ※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%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(「홈택스>상담/제보>현금영수증 미발급>미발급신고하기」) 또는 세무서(현금영수증미발급 신고서 제출)에 신청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(조회기간 : 2020년 01 ~ 12월)

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이승연	070517-*****

■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집계

구분	일반	전통시장	대중교통	도서공연등	합계금액
2020년 합계	6,600	0	0	0	6,600
3월분	0	0	0	0	0
4~7월분	0	0	0	0	0
그외 (1~2월,8~12월분)	6,600	0	0	0	6,600

■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(단위:원)

		01월	02월	03월	04월	
구분	종류	05월	06월	07월	08월	공제대상금액
		09월	10월	11월	12월	
		6,600	0	0	0	
현금영수증	일반거래	0	0	0	0	6,600
		0	0	0	0	

- 1. 공제대상 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,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(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
- ※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%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(「홈택스>상담/제보>현금영수증 미발급>미발급신고하기」) 또는 세무서(현금영수증미발급 신고서 제출)에 신청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(조회기간 : 2020년 01 ~ 12월)

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조영혜	730426-*****

■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집계

구분	일반	전통시장	대중교통	도서공연등	합계금액
2020년 합계	5,338,818	0	0	53,550	5,392,368
3월분	985,970	0	0	0	985,970
4~7월분	1,939,290	0	0	0	1,939,290
그외 (1~2월,8~12월분)	2,413,558	0	0	53,550	2,467,108

■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(단위:원)

		01월	02월	03월	04월	
구분	종류	05월	06월	07월	08월	공제대상금액
		09월	10월	11월	12월	
		581,830	845,300	985,970	272,620	
현금영수증	일반거래	303,550	345,380	1,017,740	313,570	5,338,818
		216,778	210,620	139,820	105,640	
		0	0	0	0	
현금영수증	도서.공연비등 거래	0	0	0	0	53,550
		18,000	35,550	0	0	

- 1. 공제대상 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,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(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
- ※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%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(「홈택스>상담/제보>현금영수증 미발급>미발급신고하기」) 또는 세무서(현금영수증미발급 신고서 제출)에 신청

일련번호: 20210601-09875765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-30-

2020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: 기본내역 [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]

(조회기간 : 2020년 01 ~ 12월)

■ 차입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이희주	730124-*****

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내역

(단위:원)

취급기관 (사업자번호)	대출종류 (상품명)	최초차입일 최초상환 예정일	상환 기간	주택 취득일	저당권 설정일	연간합계액	소득공제 대상액
(사업사단호)	(영급정)	차입금	고정금리 차입금	비거치식 상환차입금	당해년 원금상환액		내경픽
농업협동조합중앙 회	해당없음 (주택자금대출)	2020-08-03 2040-07-26	19년	2020-08-03	2020-08-03	629,915	629,915
(104-82-07072)	(구택자급대출)	0	0	0	0	ŕ	,

- 1. 공제 대상 :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(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,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)인 근로자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(2013.12.31. 이전은 3억원 이하, 2014.1.1.~2018.12.31. 4억원)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도시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※ 주택소유자가 근로자 본인이어야 하며, 본인 명의 차입금이 공제대상임
- 2. 공제한도 :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,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와 합하여 차입연도, 상환기간 및 상환종류 등에 따라 연 300만원, 500만원, 600만원, 1000만원, 1500만원, 1800만원 한도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(조회기간 : 2020년 01~12월)

■ 기부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이승연	070517-*****

■ 기부금 지출내역 (단위:원)

사업자번호	단체명	기부유형	기부금액 합계	공제대상 기부금액	기부장려금 신청금액
105-82-13183	사단법인 굿네이버 스 인터내셔날	종교단체외지정기부금	120,000	120,000	0
인별합계금액					120,000

- ※ 기부금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기부금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하므로 조회기간을 선택하여 조회한 경우에도 1년 전체 기부금액이 조회됩니다.
- 1. 공제 대상 : 거주자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(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)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
- ※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'정치자금기부금'과 '우리사주조합기부금'은 근로자 본인이 지급한 기부금에 한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
-32-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